

## 오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3년 11월 20일 조례 제2125호  
일부개정 2024년 12월 20일 조례 제2234호  
(제명개정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 12. 20>

**제1조의2(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)**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상포진: 1회
2. 사람유두종바이러스: 질병관리청고시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4. 12. 20]

**제2조(지원대상)**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2. 20>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. <개정 2024. 12. 20>

1. 대상포진: 65세 이상 시민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2. 사람유두종바이러스: 26세 이하의 시민
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4. 12. 20>

1.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
2. 과거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
3.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

**제3조(우선 접종 대상 선정)**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우선 접종이 필요한 연령대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.

**제4조(예방접종 실시)** ① 예방접종은 「지역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시 보건소에서 실시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삭제 <2024. 12. 20>

**제5조(위탁계약 체결)**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 및 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
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계약 해지)**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
2.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

**제7조(예방접종 비용 청구)**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예방접종 비용 지급)**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접종지원 중단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
1. 신청인이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
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
**제10조(환수)**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)**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,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.

**제12조(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)** ① 시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
3.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
4.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24. 12. 20 조례 제223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